

만약 귀하가 미국에서 대한항공 또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구입했다면

집단소송의 화해가 귀하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

(주)대한항공 (이하 “대한항공”)과 아시아나항공(주) (이하 “아시아나”)가 함께 미국과 대한민국 (이하 “한국”) 사이를 운행하는 노선의 항공 여객 탑승권에 대한 가격을 담합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아시아나와의 소송화해가 제안되었습니다.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(이하 “피고들”)는 이 소송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.

제가 본 화해 집단의 구성원인가요?

본 집단소송의 구성원에는 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의 탑승권을 적어도 하나 이상 구입한 개인들과 사업체를 (여행사 및 기업들) 이 포함됩니다. 탑승권은 미국 내에서 구입한 것에 한하며 다음 경우에만 해당됩니다:

2000년 1월 1일에서 2007년 8월 1일 사이에 구입한

- 미국발 한국행 노선 또는
- 한국발 미국행 노선의 탑승권.

화해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?

아시아나는 1천1백만 달러의 현금, 1천만 달러의 여행 바우처, 그리고 공지 및 행정 비용으로 최대 6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동의했습니다. 귀하께 지급되는 혜택은 귀하가 구입하신 탑승권의 총 달러 금액과 유효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
화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화해 혜택을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화해 혜택은 소송 종료 후 분배됩니다.

귀하는 귀하의 탑승권 구입에 대한 증빙 기록을 보관하시고 아래 웹사이트를 확인해 청구서 양식이 구비되면 이를 수령해야 합니다.

귀하의 다른 권리.

귀하가 본 화해에 의해 법적 구속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화해 집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서면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. 화해 집단에서 귀하를 제외시킬 수 있는 마감일은 **2011년 5월 16일**까지입니다. 귀하가 화해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본 화해와 관련된 일체의 주장에 대해 아시아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. 귀하가 화해 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 **2011년 5월 16일**까지 화해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제시된 상세한 집단 소송 공지는 귀하를 화해 집단에서 제외하는 방법 또는 이 화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

법원은 화해 승인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**2011년 6월 27일 오후 1시 30분**에 심리를 개최합니다. 법원은 또한 비용과 경비가 집단소송 변호인에게 배상될지 여부와 진행 중인 소송비용 및 경비를 위해 특정 금액을 별도로 배정할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합니다. 집단소송 변호인은 현 시점에 화해금에서 변호사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. 귀하 또는 귀하의 변호인은 귀하 자신의 비용으로 심리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습니다.

집단 소송 공지 및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:

www.KoreanAirPassengerCases.com 1-888-261-1921